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도 개선 >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03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2208403)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도 개선(안 제19조의3)	3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220840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준호의원 등 20인
2. 제 안 일 : 2025. 2. 25.
3. 회 부 일 : 2025.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경력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로서 보다 엄격히 보호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해당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직접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운전자격확

인시스템과 같이 암호화 및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등은 해당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제출 시 범죄경력조회 간주규정을 삭제하며, 경찰청이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단서 삭제,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도 개선(안 제19조의3)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u>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 ----- ----- ----- ----- ----- ----- ----- ---. <단서 삭제> ② ----- ----- ----- ----하고,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u>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

현행	개정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의 <u>절차·범위</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축하여야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④ ----- -----<u>절차·범위,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u>-----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지난 2024년 1월 면대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범죄자·강력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를 제한하는 종사 제한 제도¹⁾가 시행되었음.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종사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 또는 영업점은 동의서를 받아 경찰청(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하여 범죄경력조회 결과(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거나(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하 “종사자등”이라 함)이 경찰청(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제출하여 이를 확인(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경력조회 결과(범죄경력회보서)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 종사제한 사유와 무관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도 드러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경찰청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통보할 때 종사자등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종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단서를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본조신설 2024. 1. 16.]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만 통보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법무부(검찰청)로부터 죄명, 선고·처분결과 등만을 제공받고 있음에 따라 범죄사실 및 적용 법 조항, 형집행 종료·면제일 등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임.

다음, 종사제한 해당 여부를 통보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²⁾,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등에 관한 법률」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4) 등에서도 종사제한 또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범죄경력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규정을 범죄경력 조치에

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치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치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치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치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치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제공자는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이 제17조의2제2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치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한 일반법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정부 의견

1) 국토교통부

종사자가 시스템(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경우 사업자 및 영업점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회보서를 제공받고 있어 각자의 업무부담이 크지 않은 점, 제3자(사업자 또는 영업점)만 범죄경력 요청·회신이 가능한 경우 동의서를 조작하여 특정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악용 우려가 있다는 점, 민감정보 주체인 종사자의 권한을 축소함에 따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사자도 직접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 회신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은 종사자의 범죄경력이 종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경찰청에서 판단한 후 사업자에게 그 결과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 유권해석 등에 따라 경찰청은 ‘경찰청에서는 규정에 따라 확인가능한 범죄경력 조회결과만 요청자에게 제공하고, 최종 결격사유 유무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임.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 내 정보시스템(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결과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2) 경찰청

민감정보의 주체(종사자등)가 직접 요청·제공하는 방식을 삭제하고 제3자(사업자등)의 동의서만으로 범죄경력을 요청·회신받는 경우,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동의 여부 확인이 불명확하여 이에 동의서를 조작하여 특정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존재함.

아울러, 경찰청은 법무부(검찰청)로부터 ‘공소장 예규’에 따른 죄명, 선고·처분결과 등만 제공받고 있음에 따라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범죄사실 및 적용 법조항, 형집행 종료·면제일 등에 관한 내용이 부존재하여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 없음.

또한 사업자 등이 이용 가능한 정보시스템은 기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0